

‘30년 넘은 정자교 보행로, 안전점검 규정도 없었다’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.

< 보도 내용 (한겨레, 4.7) >

◆ “30년 넘은 정자교 보행로, 안전점검 규정도 없었다”

- 정기안전점검 항목에 별도의 항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.
- 다리 점검은 차도 위주로 한다. 보행로는 차량 하중과 관계가 없어 차도와 강도가 다르게 설치돼 별도의 점검 규정은 없다.

□ ‘30년 넘은 정자교 보행로, 안전점검 규정도 없었다’는 언론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.

- 교량, 터널 등 안전점검 및 진단을 위해 우리부는 ‘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’을 마련하여 이에 따라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고 있으며, 등급이 낮은 취약시설물의 안전점검·진단 결과에 대한 평가, 관리주체의 안전점검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

* 보도부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, 추락방지시설, 도로포장, 신축이음부 등에 대한 균열, 결함 및 파손 등에 대해 안전점검에 포함

- 정자교는 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에 의한 시설물의 종류 지정(‘95.6) 당시 보도부를 포함한 전체 시설물이 2종 시설물로 지정되었으며, 관리주체인 성남시는 안전점검 및 진단도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합니다.

담당 부서	기술안전정책관 시설안전과	책임자	과 장	김유진 (044-201-4598)
		담당자	기술서기관	박병배 (044-201-3585)
			주무관	이종승 (044-201-4579)

참고 1

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 정기안전점검 점검표

□ 교량

정 기 안 전 점 검 표

시 설 물 명		관 리 주 체	
준 공 년 월 일	년 월 일	최종점검년월일	년 월 일
점 검 항 목		점 검 결 과	
상부구조	(1) 교면포장 (아스콘, 콘크리트 등)		
	(2) 배수시설(배수구, 배수관 등)		
	(3) 난간(방호울타리) 및 연석		
	(4) 신축이음		
	(5) 받침(강재, 탄성받침 등)		
	(6) 바닥판(RC 및 PSC / 강재)		
	(7) 거더(RC 및 PSC/ 강재)		
	(8) 가로보 및 세로보(RC/ 강재)		
하부구조	(9) 교대		
	(10) 교각		
	(11) 기초		
기 타	(12) 아치부재, 케이블, 주탑 등		
	(13)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 ☐ 유 ☐ 무		☐ 보수필요 ☐ 보수불필요
특기사항			
점검자 의견			

- 주) 1. 현장조사 요령 참조하여 작성
 2. 본 점검표 다음에 시설물의 정기안전점검 실시결과 요약표 첨부
 3. 정기안전점검 실시결과 상태변화(손상, 결함) 등의 정도, 위치, 형상, 진행성 등을 상세히 기술
 4.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는 설치 유,무 및 책임기술자 판단에 따라 보수의 필요성 여부를 체크

점검일자 : 년 월 일

점검자 :

참고 2

1기 신도시 내 1·2·3종 시설물 지정 교량 현황

<< 1기 신도시 내 1·2·3종 교량* 현황 >>

구분		전체	1종	2종	3종	기타
합계		186	22	43	118	3
분당	성남시	105	9	21	75	-
일산	고양시	71	9	22	37	3
중동	부천시	4	4	-	-	-
평촌	안양시	4	-	-	4	-
산본	군포시	2	-	-	2	-

* 1종 : 500m 이상, 특수교 등 / 2종 : 100~500m 등 / 3종 : 20~100m 미만 등